

# e편한세상 연동 센트럴파크 1단지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 본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 [코로나19 관련 견본주택 운영안내]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e편한세상 연동 센트럴파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인하여 견본주택 관람시 입장 인원 및 운영 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감염증 확산 상황에 따라 정부정책 등으로 견본주택 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하여
    - \* 청약 및 공급계약 등 주요 분양일정에 일반고객 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 체온이 37.5°C가 넘을 경우
    - \*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을 경우
    - \* 기타 견본주택 운영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 코로나19 확산상황 및 정부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방문가능기간,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공동주택)는 2021.02.1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공동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년 04월 02일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제주특별자치도)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외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제주특별자치도)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이며 본 아파트는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로서 「주택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권 전매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 계약금(총 공급금액의 10%)을 모두 완납 후 전매가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4.02)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제주특별자치도 1년 이상(2020.04.02. 이전) 거주자가 1년 미만 거주자보다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상속,증여,경매 등으로 취득한 경우 제외)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원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 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 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주택공급 면적의 표기방법 변경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 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 가능)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 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 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 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처리되오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 포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elife.co.kr>)에 공개될 예정이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 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전매 및 재당첨 등에 관한 사항은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일반지역(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30일내)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 「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101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불법거래를 일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청약신청일정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본 아파트의 견본주택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6035-2번지에 설치되며, 홈페이지(<https://www.elife.c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서류심사 및 부적격확인)	계약체결
일정	2021년 04월 12일(월)	2021년 04월 13일(화)	2021년 04월 19일(월)	2021년 04월 22(목)~ 04월 25일(일)	2021년 05월 03일(월)~ 2021년 05월 05일(수) 3일간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후 조회 가능)	견본주택 (10:00~17:00)	-
장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사업주체 견본주택 방문접수 - 구비서류 등 지침 방문 * 서류심사 및 부적격 검수 일정 및 운영은 변경될 수 있음	당사 견본주택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6035-2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한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주택과 – 19745호(2021.04.01.)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 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293-46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1층~지상 15층 2개동, 총 10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3년 06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 면적-m<sup>2</sup>, 세대)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전용 면적	주거공용 면적	소계						
민 영 주 택	2021000181	01	084.9418A	84A	84.9418	22.0795	107.0213	37.5325	144.5538	43.3033	26	26	2
		02	084.9769B	84B	84.9769	22.7814	107.7583	37.5480	145.3063	43.3212	20	20	2
		03	084.9665C	84C	84.9665	22.1881	107.1546	37.5434	144.6980	43.3159	20	20	2
		04	084.9651D	84D	84.9651	23.0616	108.0267	37.5429	145.5696	43.3152	28	28	2
		05	145.6847	145	145.6847	39.3290	185.0137	64.3804	249.3941	74.2682	2	2	-
		06	154.5837	154	154.5837	40.9028	195.4865	68.3047	263.7912	78.8067	6	6	-
계											102	102	8

##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주택형 (약식 표기)	동 (라인)	호수	층 구분	공급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60%)						잔금 (30%)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대지비	건축비		계약시	2021.09.23	2022.01.20	2022.05.20	2022.09.20	2022.12.20	2023.03.20
84A	101동 (4,5호)	304	3	1	382,010	544,290	926,300	92,630	92,630	92,630	92,630	92,630	92,630	277,890
		305	3	1	382,010	544,290	926,300	92,630	92,630	92,630	92,630	92,630	92,630	277,890
		404	4	1	382,010	544,290	926,300	92,630	92,630	92,630	92,630	92,630	92,630	277,890
		405	4	1	382,010	544,290	926,300	92,630	92,630	92,630	92,630	92,630	92,630	277,890
		504	5	1	382,830	545,470	928,300	92,830	92,830	92,830	92,830	92,830	92,830	278,490
		505	5	1	382,830	545,470	928,300	92,830	92,830	92,830	92,830	92,830	92,830	278,490
		604	6	1	383,660	546,640	930,300	93,030	93,030	93,030	93,030	93,030	93,030	279,090
		605	6	1	383,660	546,640	930,300	93,030	93,030	93,030	93,030	93,030	93,030	279,090
		704	7	1	384,480	547,820	932,300	93,230	93,230	93,230	93,230	93,230	93,230	279,690
		705	7	1	384,480	547,820	932,300	93,230	93,230	93,230	93,230	93,230	93,230	279,690
		804	8	1	385,310	548,990	934,300	93,430	93,430	93,430	93,430	93,430	93,430	280,290
		805	8	1	385,310	548,990	934,300	93,430	93,430	93,430	93,430	93,430	93,430	280,290
		904	9	1	386,130	550,170	936,300	93,630	93,630	93,630	93,630	93,630	93,630	280,890
		905	9	1	386,130	550,170	936,300	93,630	93,630	93,630	93,630	93,630	93,630	280,890
		1004	10	1	386,950	551,350	938,300	93,830	93,830	93,830	93,830	93,830	93,830	281,490
		1005	10	1	386,950	551,350	938,300	93,830	93,830	93,830	93,830	93,830	93,830	281,490
		1104	11	1	387,780	552,520	940,300	94,030	94,030	94,030	94,030	94,030	94,030	282,090
		1105	11	1	387,780	552,520	940,300	94,030	94,030	94,030	94,030	94,030	94,030	282,090
		1204	12	1	388,600	553,700	942,300	94,230	94,230	94,230	94,230	94,230	94,230	282,690
		1205	12	1	388,600	553,700	942,300	94,230	94,230	94,230	94,230	94,230	94,230	282,690
		1304	13	1	389,430	554,870	944,300	94,430	94,430	94,430	94,430	94,430	94,430	283,290
		1305	13	1	389,430	554,870	944,300	94,430	94,430	94,430	94,430	94,430	94,430	283,290
		1404	14	1	390,250	556,050	946,300	94,630	94,630	94,630	94,630	94,630	94,630	283,890
		1405	14	1	390,250	556,050	946,300	94,630	94,630	94,630	94,630	94,630	94,630	283,890
		1504	15	1	391,080	557,220	948,300	94,830	94,830	94,830	94,830	94,830	94,830	284,490
		1505	15	1	391,080	557,220	948,300	94,830	94,830	94,830	94,830	94,830	94,830	284,490
84B	101동 (2호)	202	2	1	359,320	511,980	871,300	87,130	87,130	87,130	87,130	87,130	87,130	261,390
		302	3	1	361,390	514,910	876,300	87,630	87,630	87,630	87,630	87,630	87,630	262,890
		402	4	1	363,450	517,850	881,300	88,130	88,130	88,130	88,130	88,130	88,130	264,390
		502	5	1	364,270	519,030	883,300	88,330	88,330	88,330	88,330	88,330	88,330	264,990
		602	6	1	365,100	520,200	885,300	88,530	88,530	88,530	88,530	88,530	88,530	265,590
		702	7	1	365,920	521,380	887,300	88,730	88,730	88,730	88,730	88,730	88,730	266,190
		802	8	1	366,750	522,550	889,300	88,930	88,930	88,930	88,930	88,930	88,930	266,790
		902	9	1	367,570	523,730	891,300	89,130	89,130	89,130	89,130	89,130	89,130	267,390
		1002	10	1	368,400	524,900	893,300	89,330	89,330	89,330	89,330	89,330	89,330	267,990
		1102	11	1	369,220	526,080	895,300	89,530	89,530	89,530	89,530	89,530	89,530	268,590
	102동 (2호)	202	2	1	361,390	514,910	876,300	87,630	87,630	87,630	87,630	87,630	87,630	262,890
		302	3	1	365,510	520,790	886,300	88,630	88,630	88,630	88,630	88,630	88,630	265,890

	402	4	1	367,570	523,730	891,300	89,130	89,130	89,130	89,130	89,130	89,130	89,130	267,390
	502	5	1	368,400	524,900	893,300	89,330	89,330	89,330	89,330	89,330	89,330	89,330	267,990
	602	6	1	369,220	526,080	895,300	89,530	89,530	89,530	89,530	89,530	89,530	89,530	268,590
	702	7	1	370,050	527,250	897,300	89,730	89,730	89,730	89,730	89,730	89,730	89,730	269,190
	802	8	1	370,870	528,430	899,300	89,930	89,930	89,930	89,930	89,930	89,930	89,930	269,790
	902	9	1	371,700	529,600	901,300	90,130	90,130	90,130	90,130	90,130	90,130	90,130	270,390
	1002	10	1	372,520	530,780	903,300	90,330	90,330	90,330	90,330	90,330	90,330	90,330	270,990
	1102	11	1	373,350	531,950	905,300	90,530	90,530	90,530	90,530	90,530	90,530	90,530	271,590
84C	101동 (1호)	201	2	1	365,510	520,790	886,300	88,630	88,630	88,630	88,630	88,630	88,630	265,890
		301	3	1	369,630	526,670	896,300	89,630	89,630	89,630	89,630	89,630	89,630	268,890
		401	4	1	371,700	529,600	901,300	90,130	90,130	90,130	90,130	90,130	90,130	270,390
		501	5	1	372,520	530,780	903,300	90,330	90,330	90,330	90,330	90,330	90,330	270,990
		601	6	1	373,350	531,950	905,300	90,530	90,530	90,530	90,530	90,530	90,530	271,590
		701	7	1	374,170	533,130	907,300	90,730	90,730	90,730	90,730	90,730	90,730	272,190
		801	8	1	375,000	534,300	909,300	90,930	90,930	90,930	90,930	90,930	90,930	272,790
		901	9	1	375,820	535,480	911,300	91,130	91,130	91,130	91,130	91,130	91,130	273,390
		1001	10	1	376,640	536,660	913,300	91,330	91,330	91,330	91,330	91,330	91,330	273,990
		1101	11	1	376,640	536,660	913,300	91,330	91,330	91,330	91,330	91,330	91,330	273,990
	102동 (3호)	203	2	1	369,630	526,670	896,300	89,630	89,630	89,630	89,630	89,630	89,630	268,890
		303	3	1	373,760	532,540	906,300	90,630	90,630	90,630	90,630	90,630	90,630	271,890
		403	4	1	375,820	535,480	911,300	91,130	91,130	91,130	91,130	91,130	91,130	273,390
		503	5	1	376,640	536,660	913,300	91,330	91,330	91,330	91,330	91,330	91,330	273,990
		603	6	1	377,470	537,830	915,300	91,530	91,530	91,530	91,530	91,530	91,530	274,590
		703	7	1	378,290	539,010	917,300	91,730	91,730	91,730	91,730	91,730	91,730	275,190
		803	8	1	379,120	540,180	919,300	91,930	91,930	91,930	91,930	91,930	91,930	275,790
		903	9	1	379,940	541,360	921,300	92,130	92,130	92,130	92,130	92,130	92,130	276,390
		1003	10	1	380,770	542,530	923,300	92,330	92,330	92,330	92,330	92,330	92,330	276,990
		1103	11	1	380,770	542,530	923,300	92,330	92,330	92,330	92,330	92,330	92,330	276,990
84D	101동 (3호)	203	2	1	365,510	520,790	886,300	88,630	88,630	88,630	88,630	88,630	88,630	265,890
		303	3	1	369,630	526,670	896,300	89,630	89,630	89,630	89,630	89,630	89,630	268,890
		403	4	1	371,700	529,600	901,300	90,130	90,130	90,130	90,130	90,130	90,130	270,390
		503	5	1	372,520	530,780	903,300	90,330	90,330	90,330	90,330	90,330	90,330	270,990
		603	6	1	373,350	531,950	905,300	90,530	90,530	90,530	90,530	90,530	90,530	271,590
		703	7	1	374,170	533,130	907,300	90,730	90,730	90,730	90,730	90,730	90,730	272,190
		803	8	1	375,000	534,300	909,300	90,930	90,930	90,930	90,930	90,930	90,930	272,790
		903	9	1	375,820	535,480	911,300	91,130	91,130	91,130	91,130	91,130	91,130	273,390
		1003	10	1	376,640	536,660	913,300	91,330	91,330	91,330	91,330	91,330	91,330	273,990
		1103	11	1	377,470	537,830	915,300	91,530	91,530	91,530	91,530	91,530	91,530	274,590
		1203	12	1	378,290	539,010	917,300	91,730	91,730	91,730	91,730	91,730	91,730	275,190
		1303	13	1	379,120	540,180	919,300	91,930	91,930	91,930	91,930	91,930	91,930	275,790
		1403	14	1	379,940	541,360	921,300	92,130	92,130	92,130	92,130	92,130	92,130	276,390
		1503	15	1	380,770	542,530	923,300	92,330	92,330	92,330	92,330	92,330	92,330	276,990
	102동 (1호)	201	2	1	365,510	520,790	886,300	88,630	88,630	88,630	88,630	88,630	88,630	265,890
		301	3	1	369,630	526,670	896,300	89,630	89,630	89,630	89,630	89,630	89,630	268,890

	401	4	1	371,700	529,600	901,300	90,130	90,130	90,130	90,130	90,130	90,130	270,390
	501	5	1	372,520	530,780	903,300	90,330	90,330	90,330	90,330	90,330	90,330	270,990
	601	6	1	373,350	531,950	905,300	90,530	90,530	90,530	90,530	90,530	90,530	271,590
	701	7	1	374,170	533,130	907,300	90,730	90,730	90,730	90,730	90,730	90,730	272,190
	801	8	1	375,000	534,300	909,300	90,930	90,930	90,930	90,930	90,930	90,930	272,790
	901	9	1	375,820	535,480	911,300	91,130	91,130	91,130	91,130	91,130	91,130	273,390
	1001	10	1	376,640	536,660	913,300	91,330	91,330	91,330	91,330	91,330	91,330	273,990
	1101	11	1	377,470	537,830	915,300	91,530	91,530	91,530	91,530	91,530	91,530	274,590
	1201	12	1	378,290	539,010	917,300	91,730	91,730	91,730	91,730	91,730	91,730	275,190
	1301	13	1	379,120	540,180	919,300	91,930	91,930	91,930	91,930	91,930	91,930	275,790
	1401	14	1	379,940	541,360	921,300	92,130	92,130	92,130	92,130	92,130	92,130	276,390
	1501	15	1	380,770	542,530	923,300	92,330	92,330	92,330	92,330	92,330	92,330	276,990
145	101동 (2호)	1502	15	1	585,212	833,888	1,419,100	141,910	141,910	141,910	141,910	141,910	425,730
	102동 (2호)	1502	15	1	591,390	842,710	1,434,100	143,410	143,410	143,410	143,410	143,410	430,230
154	101동 (2호)	1202	12	1	638,817	910,283	1,549,100	154,910	154,910	154,910	154,910	154,910	464,730
		1302	13	1	610,780	870,320	1,481,100	148,110	148,110	148,110	148,110	148,110	444,330
		1402	14	1	611,603	871,497	1,483,100	148,310	148,310	148,310	148,310	148,310	444,930
	102동 (2호)	1202	12	1	645,006	919,094	1,564,100	156,410	156,410	156,410	156,410	156,410	469,230
		1302	13	1	616,958	879,142	1,496,100	149,610	149,610	149,610	149,610	149,610	448,830
		1402	14	1	617,781	880,319	1,498,100	149,810	149,810	149,810	149,810	149,810	449,430

※ 평형환산방법 : 공급면적( $m^2$ ) × 0.3025 또는 공급면적( $m^2$ ) ÷ 3.3058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공급안내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별도로 형태 및 면적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적은 계산상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 차이로 인해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의 합계는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자리의 표기 방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세대당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공급금액에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공통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5항에 의거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랍니다.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으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호실별 등 차등을 두어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전용 85m<sup>2</sup>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없으며 전용 85m<sup>2</sup>초과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 $m^2$ )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등록세 통합), 기타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기 공급금액에 해당되는 공용면적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기를 산정하였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입)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며, 연체료 납부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공사감리자의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공사 감리자의 공정확인서에 의해 건축공사비(대지매입비 제외)의 50%이상 투입이 확인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에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않음)

- 전용면적은 주택법에 따라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이 하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이 없음)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유상옵션 등은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등은 분양계약자가 선택하여 별도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 균형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공동주택)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상기 주택에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청약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 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 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거주자가 1년미만 거주자보다 우선합니다.</li><li>• 10년 이상 장기 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 가능) ※ 청약 신청시 아래 "청약 신청 유의사항", "청약 순위별 자격요건",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을 확인바랍니다.</li></ul>
청약신청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주민등록표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li><li>•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li><li>•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li><li>•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li><li>•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li><li>•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li><li>•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li><li>•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 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li><li>•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ol style="list-style-type: none"><li>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li><li>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li><li>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li><li>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li></ol></li><li>• 청약접수방식 : 주택형별로 총, 동, 호 구분 없이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된 주택형에 대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li><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제한사항 :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li><li>• 청약신청자의 착오로 잘못 접수된 청약당첨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li><li>•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li><li>•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습니다.</li></ul>

### ■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거주구분	순위	면적구분	청약관련예금 및 신청자격
민영주택	1) 해당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1년 이상 거주자	1순위	전용면적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제 (40%) 및 추첨제 (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li>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li>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li> <li>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li> </ul> </li> </ul> <p>※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자의 세대에 속한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2) 기타지역: 제주특별자치도 1년 미만 거주자		전용면적 85㎡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0% 추첨제 적용</li> <li>•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자</li> <li>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모집공고 전일까지 예금으로 전환, 청약예금의 조건을 충족한자</li> <li>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제1순위자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자</li> <li>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총 납입금액이 해당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자</li> </ul> </li> </ul>
		2순위	전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기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 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자)</li> </ul>

####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구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면적 모두 청약 가능합니다.

####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li> <li>2) 소형 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li> <li>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li> <li>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합니다)</li> </ol> </li> <li>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합니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li> </ol>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합니다.</li> <li>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직계존속</li> <li>-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li> </ul> <p>※ 2020.0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p> <p>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li> <li>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li> <li>-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li> </ul> </li> </ul>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 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li> <li>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합니다.</li> </ol>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p>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p>

####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혹은 유주택자	0	8년 이상~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li> <li>-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등</li> <li>-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분리세대 또는 단독세대의 경우 제출</li> <li>-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li> </ul>
		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20	
		1년 이상~2년 미만	4	10년 이상~11년 미만	22	
		2년 이상~3년 미만	6	11년 이상~12년 미만	24	
		3년 이상~4년 미만	8	12년 이상~13년 미만	26	
		4년 이상~5년 미만	10	13년 이상~14년 미만	28	
		5년 이상~6년 미만	12	14년 이상~15년 미만	30	
		6년 이상~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8년 미만	16	-	-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 등·초본</li> <li>-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li> <li>-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 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만18세 이상~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li> <li>(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li> </ul> </li> </ul>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li> </ul>
		6개월 이상~1년 미만	2	9년 이상~10년 미만	11	
		1년 이상~2년 미만	3	10년 이상~11년 미만	12	
		2년 이상~3년 미만	4	11년 이상~12년 미만	13	
		3년 이상~4년 미만	5	12년 이상~13년 미만	14	
		4년 이상~5년 미만	6	13년 이상~14년 미만	15	
		5년 이상~6년 미만	7	14년 이상~15년 미만	16	
		6년 이상~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8년 미만	9	-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

#### ■ 일반공급 입주자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li> <li>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m<sup>2</sup>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li> </ul>
------------------------	---

선정	<p>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li> <li>-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li> <li>•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14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li> <li>•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li> <li>•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li> <li>-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li> </ul> </li> <li>-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li> <li>•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등호수를 공개한 후 등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등호수를 배정합니다. (등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li> </ul>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li> <li>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li> <li>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 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li> <li>「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li> </ul>

### III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 대상자	신청일자	신청 방법	신청장소
일반 공급	1순위	2021.04.12.(월) 08:00~17:30	• 인터넷 청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스마트폰앱</li> <li>• 대행은행 창구</li> </ul>
	2순위	2021.04.13.(화) 08:00~17:30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표(초)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자격확인 공통 사전제출서류(일반공급, 예비입주자)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O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사업주체 견본주택 비치
	O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일자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도 가능하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O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제23조 2항 7호에 의거 해외거주기간 확인을 위해 필수 제출 * 조회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증명 (기록대조 시작일 : 생년월일 / 기록대조 종료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O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및 세대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등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O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

▣ 일반공급(가점제 및 예비입주자) 자격확인 제출서류(추가해당자)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비고
	필수	추가(해당자)				
일반 공급 (가점 제, 예 비입 주자)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그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로 존속을 부양기족으로 산정한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사실 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O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1년이상 계속해서 부양한 사실 추가 증빙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기족으로 산정한 경우	
	O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O	출입국사실 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로 설정		
	O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 30세 미만 기혼자가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제3자 대리 인 신청 시 추가 사항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발급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불가)		
	O	위임장	본인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 비치		
	O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부적 격 통보 를	O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등기사항전무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받은 자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O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해당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활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려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자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청약신청」⇒「APT청약신청」⇒「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준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월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 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시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 노약자, 장애우 등 은행창구 청약시 구비사항(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가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li> <li>예금인장 또는 본인서명</li> </ul>			
	제3자 대리신청서 추가사항 (본인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인감증명 방식</th> <th style="text-align: center; padding: 2px;">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style="padding: 2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사는 제출 생략)</li> <li>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ul> </td> <td style="padding: 2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ul> </td> </tr> </tbody> </table> <p style="margin-left: 20px;">※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p>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사는 제출 생략)</li> <li>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ul>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사는 제출 생략)</li> <li>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ul>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척도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IV 당첨자발표 및 계약일정

##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일반공급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2021.04.19(월)</li> <li>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li> <li>※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1.05.03.(월)~2021.05.05.(수) 10:00~16:00</li> </ul> </li> <li>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사 견본주택 (장소 : 제주시 아라일동 6035-2)</li> </ul> </li> </ul>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로 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로 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로 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전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1.04.19.(월)~2021.04.28.(수) 10일간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li> <li>- 스마트폰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li> </ul> ※ 당첨조회(10일)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 사항 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1.04.19(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V 계약 체결 및 입주

### ■ 계약체결 절차 및 유의사항

#### 1. 계약기간 및 장소

- 계약체결일시 : 2021.05.03.(월) ~ 2021.05.05.(수) (3일간, 시간 10:00~16:00)
- 계약체결장소 : e편한세상 연동 센트럴파크 견본주택 (제주시 아라일동 6035-2번지 / 문의전화 : 064-755-8300)

#### 2. 계약시 구비 서류

구분	서류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input type="radio"/>	자격검증서류 일체	-	-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한자는 제외)
	<input type="radio"/>	추가 개별통지서류	-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input type="radio"/>	신분증	본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input type="radio"/>	인감증명서	본인	-	- 용도에 [아파트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본인 계약 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본인발급용)
	<input type="radio"/>	인감도장	본인	-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input type="radio"/>	계약금입금증	-	-	- 견본주택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이체
제3자 대리인 계약 시 (추가제 출)	<input type="radio"/>	인감증명서	본인	-	- 용도에 [아파트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 대리인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및 본인발급용으로 제출
	<input type="radio"/>	위임장	-	-	- 견본주택에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input type="radio"/>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외국인사실증명서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의 입장 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에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합니다.(대리접수 불가)

※ 계약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 대리 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 합니다.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한 친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1년, 수도권외의 지역 6개월(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 계약세대 발생 시 예비 당첨자에게 적격여부 확인 후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에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에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행정구역,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수분양자는 이에 대해 수인동의합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이후에도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홈페이지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수분양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본 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계약자는 이에 대해 수인동의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계약금 납부 : 아래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 제출 [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계약금 납부계좌	NH농협은행	317-0022-2288-31	한국자산신탁(주)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납부일에 계약서에 기재된 본인의 입금계좌번호로 무통장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납부계좌는 공급계약서에 세대별로 가상계좌 형태로 부여되고, 납부된 중도금 및 잔금은 모계좌인 상기 계약금 납부계좌로자동이체됩니다.

※ 상기 계좌 및 계약서에 기재된 본인의 입금계좌번호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101동 1203호 홍길동)

※ 무통장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정당 당첨자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의 미납 또는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효력이 상실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납부약정일이 변동(연기 등)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시 고지된 것으로 합니다.(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추가선택품목 계약과 관련한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상기의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다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후 중도금 대출 약정일 이전에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금융기관 대출조건(대출금리, 대출승인 등)에 이의가 없는 계약자는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가 가능합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 시 무이자 조건(분양대금의 50%)으로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으로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분양사업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가능하나, 관련정책(대출제한 및 금리상승 등)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등으로 대출조건 및 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향후 사업주체에서 지정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대출제한 등) 변경, 국제금융 위기상황 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단대출 승인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대출금융기관 알선이 불가능하거나 중도금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출이 제한(불가)될 경우 공급금액을 자기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대출이자 및 인자세 등의 발생비용은 사업주체와 무관합니다.(중도금대출 은행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 본인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금융 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 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총 분양대금의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단, 사업주체가 일선한 중도금 대출기관의 중도금 대출 이자만 해당하며, 관련정책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비율을 제한받아 계약자가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한 중도금에 대한 대출이자는 해당하지 않음)하여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사업주체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에서 일선한 1금융권 또는 2금융권 중도금 대출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된 경우 계약자 본인의 개인신용등급에 대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사업주체에서 일선한 1금융권 또는 2금융권 중도금 대출은행에서 계약자 본인의 개인신용 등 사유로 중도금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출금"의 무이자 조건은 적용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중도금 납부 회차에 맞추어 계약자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하며, 무이자 조건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 비규제지역의 경우 세대당 2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거소 요건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대출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고 청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부동산 정책 및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담보비율이 감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금액 중 일부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시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대출 업무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 예비당첨자에 대한 추첨 및 계약안내

- 정당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대상자 소명기간(부적격대상자통보일로 부터 7일) 이후 예비당첨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 일시는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통지한 예비당첨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 일시에 불참 등으로 인해 발생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입주자 사전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지정개시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 입주예정일 : 2023년 6월 예정(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 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선납할인은 입주자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되며, 입주자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정부 재난지역 선포 등), 문화재 발굴,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하기로 하며 이에 대해 확인합니다.
- 입주자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재산세 등)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입주자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자정기간 종료일 이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 부대복리시설

- 카페리운지, 주민회의실, 피트니스 클럽, 스크린골프,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등

####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VI 별도품목 계약

### ■ 발코니 확장

- 본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비용은 분양가 포함입니다.

#### 1.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아파트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적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일괄확장(일부 발코니, 히향식피난구, 보일러설치공간 등은 제외) 기준이며, 실별, 위치별, 부위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계약이 불가하며, 발코니 확장계약 등을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공급안내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가 시공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에 별도의 행위허가 후 시공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가 입주 후에 시공사와 무관하게 실내인테리어업체를 통하여 발코니 확장을 개별시공(관계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의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 있습니다.(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미확장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호통 또는 배수구 등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발코니 확장 세대는 미확장 발코니에 선호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됨)
- 확장도지 아니하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발코니 사시 설치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정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형 선택 시에는 외부창호는 단창으로 설치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입주자의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샤시, 유리창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비확장 세대의 경우 등기구의 개수 및 램프의 개수가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실사용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개방형 배란다에 필요시 선호통, 선호통 BOX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 발코니 확장 공사 내역

구분	시공부위	비 확장형 기본 (마감)	확장형 (마감)
발코니 확장	거실 발코니	바닥 : 타일 벽/천정 : 도장	바닥 : 거실과 동일마감 및 난방시공 벽/천정 : 도배 /타일(아트월)
	침실2,3,4 발코니	바닥 : 타일 벽/천정 : 도장	바닥 : 침실,2,3,4와 동일마감 및 난방시공 벽/천정 : 도배
	알파공간	바닥 : 타일 벽/천정 : 도장	바닥 : 알파공간과 동일마감 및 난방시공 벽/천정 : 도배
	주방 발코니, 다용도실 등	바닥 : 타일 벽/천정 : 도장	바닥 : 주방과 동일마감 벽/천정 : 도배 / 도장 주방가구 : 키큰장, 상하부장 연장, 냉장고장

\* 상기 공사내역은 타입별로 마감적용부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해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 수전 및 가스계량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에어컨, 중문, 불박이장, 각 실의 수납선반, 주방TV 등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추가 선택품목

#### 1. 무상 선택품목(발코니확장 계약 시 선택가능)

##### ① 무상옵션 – 거실 확장형 선택 (84D 탑입)

구분	84D 탑입	
	기본형	거실 확장형
비고	거실 + 팬트리(창고)	거실 확장(팬트리(창고) 미설치)

- 무상 선택품목은 본 계약 시 진행할 예정이며, 추후 변경이 어려운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항은 공급안내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84D타입의 거실의 기본형은 팬트리(창고) 벽체시공 및 마감, 도어, 내부시스템장 등으로 구성되어 설치됨.

## 2. 유상 선택품목 - 계약일정 추후안내 예정

### ① 평면 유상옵션 - 주방 수납강화형 (84A, 84C, 84D 타입)

(단위 : 원, VAT포함)

타입	84A	84C	84D
금액	4,730,000	5,390,000	6,380,000
비고	미선택 시 주방, 알파공간 별도구획 / 선택 시 주방, 알파공간 통합 및 시스템가구 + 수납 장식장 제공		
유의사항	주방 수납강화형 선택 시 에어컨 설치위치, 주방우물천장 영역, 난방공간 Zoning, 환기구 위치 등이 변경됩니다.		

- 주방 수납강화형 선택 시 주방우물천정 및 마감영역, 에어컨 위치 등의 변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바닥마감재 유상옵션 - 헤링본패턴 강마루(전체 타입)

(단위 : 원, VAT포함)

타입	84A	84B	84C	84D	145	154
금액	3,850,000	3,650,000	3,650,000	3,950,000	5,250,000	5,800,000
비고	미선택 시 일반패턴 강마루 시공					
유의사항	헤링본패턴 강마루 설치영역은 공급안내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요망					

### ③ 가전 유상옵션 - 빌트인 가전 (전체 타입 동일)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주택형	제조사 및 모델명	판매가격					비고
			84A	84B	84C	84D	145, 154	
빌트인 냉장고 빌트인김치 냉장고	각 타입	삼성 빌트인 클래딩 TBI냉장고(일반형) BRS665040SR	6,800,000	6,900,000	6,650,000	6,550,000	6,700,000	빌트인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결합 판매(가전사 택 1) ※가구장 수정비용 포함
		삼성 빌트인 김치냉장고 RQ22K5L01EC						
		LG DIOS 빌트인 양문형냉장고 S711SI24B	7,150,000	7,250,000	7,000,000	6,900,000	7,050,000	
		LG DIOS 빌트인 김치냉장고 K221PR14BL/R1						
전기오븐	전타입	삼성 빌트인 스마트 오븐 NQ50H5533KS			700,000			택1
		SK매직 스팀 오븐 EON-B401SA			650,000			
식기세척기	전타입	삼성 식기세척기 DW60T7065SS			900,000			택1
		LG DIOS 식기세척기 DUB22SB			1,160,000			
인덕션	전타입	삼성 비스포크 인덕션 3구 NZ63T8708X			900,000			택1 (기본제공품 업그레이드)
		SK매직 더블쿼드 인덕션 IHR-BQ40			1,750,000			

### ④ 유상 선택품목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유상 선택품목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704-131166	디엘이앤씨(주)

-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지정된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옵션 대금(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세대별 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시공사에서는 별도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계약 시 현금수취 불가, 신용카드 불가)
- 추가선택품목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시공사가 적의 조정한 별매품에 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계약 체결을 위하여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착오 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⑤ 유의사항

-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시공사 디엘이앤씨(주)가 주관하여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제품상세내역, 납부금액 및 시기는 추후 별도로 분양계약자에게 공지 후 계약체결 예정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 공급금액은 아파트 분양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 공급금액에는 취득세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입주시 개별납부)
-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 비용은 주택형별로 산출된 가격입니다.
- 시공 상의 관리문제(발주 및 설치)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단 계약 체결 일정은 추후 통보함)
- 추가선택품목(유상 옵션) 설치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품목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 품목(유상 옵션) 계약해지 시 위약금이 발생하며 이는 시공사에 귀속됩니다. (상세내용은 추가선택품목 계약서에 명기하고 계약 체결하오니 계약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 계약에 따라 인접하는 가구, 마감재, 벽체, 몰딩, 걸레반이, 커텐박스, 등기구, 스위치 및 콘센트 등의 위치와 형태가 견본주택 및 홍보물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에 따라 기본으로 제공되는 품목의 형태, 사이즈 등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빌트인 가전제품의 경우 선택에 따라 가구의 넓이, 깊이, 몰딩 등의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의 구성 및 설치위치, 형태 등은 주택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 빌트인 전기오븐 미 선택시 해당부위에는 주방가구 하부장이 설치됩니다.
- 쿡탑은 기본 제공품목으로 하이브리드 쿡탑(하이라이트 2구, 인덕션1구)이 설치되고 유상옵션 선택시는 설치 및 제공하지 않으며, 해당 금액을 가감하여 판매가격에 반영하였습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가스배관은 설치되며, 하이브리드 쿡탑 기본제공에 따라 가스배관 연결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빌트인 양문형냉장고, 김치냉장고 미 선택시 해당부위에는 주방가구 기본장이 설치되며, 일반냉장고, 일반김치냉장고 설치 시 가전의 사이즈에 따라 기본 제공하는 주방가구장보다 돌출되어 설치됩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설치지점에 이르러 생산단종(제품의 품절, 품귀, 성능개선, 디자인개선 등의 사유) 후 신모델 출시 시 동제조사와 동급, 동가로 변경제공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폐업, 부도,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제품공급이 불가 시 동급, 동가의 타제조사 제품으로 변경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발생 시 공고한 바에 따라 적용되며 별도의 동의서는 징구하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 품목(유상 옵션)의 판매가격(가전포함)은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분에 해당하는 비용과 옵션 품목 설치시 증가비용을 가감 정산하여 반영한 금액으로 주택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에 대하여는 e편한세상 연동 센트럴파크 견본주택에 일부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에 관한 상세내용 중 공고문에 기재하지 못한 내용은 추후 추가선택품목 계약 시 별도의 안내 후 계약 진행예정입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은 설치의 특성상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유상 옵션)의 철거 등으로 인해 발생된 마감재 보수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 본 아파트 공급계약이 해제 되는 경우 추가선택품목 계약도 함께 해제됩니다.(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사업주체에 귀속됨)
- 추가 선택품목 중 완제품으로 시공된 전자제품의 하자는 아파트 하자담보 책임범위에서 제외되며, 하자발생 시 제조사 보증책임에 따라 처리됩니다.
-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부위 가구 후면 및 바닥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되며, 판매가격 산정 시 해당하는 설치비용은 감액하여 책정하였습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특성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써 상품구성 및 디자인 제품모델, 판매가격에 대해 교체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추가선택 품목 중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는 주방디자인 구성상 결합하여 판매하며, 기본제공되는 가구장 수정가격이 포함됨에 따라 타입별 판매가격이 상이합니다.

## VII 유의 사항

###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멀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 소형·저가주택 1호(1세대)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이하이며,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이하, 비수도권은 8천만원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①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소형·저가주택 공시가격 적용기준

가)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됩니다.

####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자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전산관리자정기관은 통보받은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의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부적격 당첨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청약 관련 유의사항(경과기간 및 요건 등)

##### • 청약통장의 주택규모 변경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 ① 청약예금의 신청주택규모를 작은 면적에서 큰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 해당 면적의 청약신청이 가능(작은면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하위면적 모두 신청 가능하므로 변경 불필요)
  - ② 청약저축 가입자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총족되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
-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 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 간 예금금액 차액 발생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차액만큼 증액하여야 청약신청이 가능.(감액사유 시 변경 불필요)
- 주택공급 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거주지역명을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람.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공급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공급 세대수의 14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일정(당첨자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 무효 처리함.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나 정정은 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계약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하고 수인동의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청약 및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일반 유의사항)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하기로 합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가 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측정결과를 입주 3일 전부터 60일간 입주자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 안에서 옥탑, 지붕, 난간, 입면, 단지시설물 등의 위치가 이동 되는 등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동별·층별 등 공급가격의 상이함을 인지하시고 수인동의하기로 하며 이에 대해 확인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부대, 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기 청약자격 전산수록한 자 중 주민등록사항(거주지역, 세대주기간, 부양가족 등) 등의 청약자격이 변동된 자는 청약신청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전산수록 사항을 변경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사전에 변경 요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지된 내용과 청약자 기재사항을 반드시 대조하여 이상 유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터넷,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분양사업자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 아파트의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형·민사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아파트 계약자는 이에 대해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2020.02.21.부터 거래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소재지 주무관청으로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주가 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의 체결로 인해 총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계약관련 유의사항)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m<sup>2</sup>)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m<sup>2</sup>) × 0.3025 또는 형별면적(m<sup>2</sup>) ÷ 3.3058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사업주체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전용 85m<sup>2</sup>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없으며 전용 85m<sup>2</sup>초과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고, 각 주택형별 모두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취득세 등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내, 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 및 항공기운항으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공급안내문 및 홍보 제작물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 (민원)

- 본 사업의 시공사인 디엘이앤씨(주)는 2021년 1월 4일자로 대림산업 주식회사에서 사명이 변경되었으며,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건설사업부문은 디엘이앤씨 주식회사가 신설되어 “일체의 자산, 핵심브랜드, 건설업 영위기간 및 시공능력 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 승계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과 관련된 서류 또는 제작홍보물에는 디엘이앤씨 주식회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사명변경 관련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타 분양 목적물의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과 본 분양목적물을 비교하여 분양홍보판 및 건축허가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 추가적인 사양이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 목적물과 충분히 비교 검토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컴퓨터그래픽(CG), 영상, 모형 등은 이해를 돋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계약내용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로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고, 아파트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 건립으로 유입되는 초등학생은 신제주초등학교에 배정될 예정이며, 사업추진현황 변동(취소, 해제 등), 세대수 변경, 사업추진의 장기화 등 제반 여건의 변화와 학급당 학생수 하향 조정 정책 추진에 따라 학생배치계획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수립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사회재난 등에 따른 정부의 정책이나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준공 전후 계약자(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계획승인도서 이외의 사항이 필요한 경우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계약자(입주자)가 부담하여 법적기준에 위배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용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주민공동시설 D/A(설비 환기구), 쓰레기 보관소, 실외기, 근린생활시설, 가스정압기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확인 및 수인합니다.
-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12호)을 준수하며 층간소음·진동등으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면적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의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수인동의합니다.
- 입주예정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단지 내 조경, 입면 및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는 전기실 및 빌전기, 유량조정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배기구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진동, 해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고 수인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과정에서 주변환경, 개발계획, 교통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사항은 추후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 가능하오니, 관련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계약자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컴퓨터그래픽(CG), 영상 등에 표현된 옥상 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바닥포장, 단지 내 조경 및 수공간,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 시에 제시된 컴퓨터그래픽(CG), 영상, 세대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을 수인하기로 하며, 제반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 수인동의합니다.
- 견본주택 및 공급안내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각 부위별 치수, 스케일 등 포함)
- 추후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에 음식점 또는 다양한 업종의 입점으로 인하여 직·간접(배기설비)적인 소음, 냄새, 프라이버시 등에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수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변경에 관한 사항은 사업주체간의 결정을 수용하기로 하며 사업주체 변경 시 입주자(계약자 등 포함)는 이를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 인터넷홈페이지의 VR동영상은 3D,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으로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내외부 조경, 경관조명, 단지 내외부 조명 및 사인,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위치조정에 대한 요구가 있을 시 입주자의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용도별로 별도 설치하지 않고 통합으로 사용 및 설치된 부분(공용부분의 상하수도, 전기 등)에 대한 유지, 보수, 관리는 입주자(입점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 관리 상 필요시 타용도의 입주자(입점자) 및 이용자가 아파트 공용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수인·동의합니다.
- 배차계획 상 동별 주차구획 배분이 다를 수 있으며 일부 동의 경우 지하주차장에서 주동 출입동선이 멀어 불편할 수 있으니 주동 출입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인지·수인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필로티 하부, 공용 파이프 샤프트 등 외기에 노출되는 배관의 동파방지를 위한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사용에 따른 전기료는 공용요금으로 부과됩니다.
- 부대시설, 주민공동시설, 우수조, 저수조, 유량조정조 등 입주 후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세부계획은 변경될 수 있고, 마감자재는 등등 수준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으며, 건축법 및 소방법 등 관계법령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출입구의 경비실 위치 및 주차 차단기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조망, 일조권 등은 주변 개발 행위 등의 변화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등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다를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근접하여 배치된 동의 일부세대는 소음(경보음 포함) 및 자동차 전조등, 보안등, 수목투시등, 블라드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환기용 구조물과 지하주차장 램프 등의 형태와 디자인은 본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 시공계획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조경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연적으로 일부 침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불박이류(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상하부장 및 아일랜드장, 욕실장, 욕실가울, 욕조, 위생도기류 등 은폐부위)의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실시공 시 세대내 회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기울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자는 침실내부로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입니다.
- 전기실, 발전기실에 인접한 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매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주거동 내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전실공간은 관련 법령에 의거 임의로 구조변경이 금지되며, 공용부위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고 동별타입별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 각 동 출입구와 인접한 세대는 보행자의 통행 및 이용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쓰레기 보관소는 102동 3호라인 1층 필로티 하부에 설치될 예정으로 냄새 및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분리수거함의 위치 및 규모, 개소는 등별 이용자의 편리성과 수거를 고려하여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골조상이 스프링클러 설치 등으로 세대 내 부분적으로 천장높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외부 색채, 포장재, 시설물, 식재 등의 세부 사항은 본 공사 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마케팅을 위하여 제작 된 약도 및 지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위한 제작물이므로 청약예정자 및 계약예정자는 필히 현장 및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총 단지, 건물 구조 등으로 인해 조성되는 외부공간(테라스 등)에서 입주민으로 인한 소음 및 각종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 등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경미한 설계변경의 범위 안에서 옥탑, 지붕, 난간, 입면, 단지시설물 등의 위치가 이동 되는 등 디자인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동옥탑부, 벽면, 문주 등에 설치 예정인 e편한세상 심벌 단지명, 설치위치, 디자인 등은 본 시공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동 지붕에 설치 예정인 e편한세상 심벌은 본시 공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CG 및 단지모형에 적용된 외부 로고 및 사인은 이해를 돋기위한 것으로, 본사공시 e편한세상 브랜드 가이드라인에 맞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15층 이하의 단지로서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적용 받지 않습니다.
- 본 아파트는 지상 주차 및 필로티 하부에 주차장이 설치되어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확인 및 수인합니다.

#### (견본주택)

- 견본주택은 84A타입만 설치되며, 견본주택이 설치되지 않은 타입에 대해서는 분양안내문, 모델하우스 비치용 (사업계획승인) 설계도서 확인 및 분양상담을 통해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자체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분양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활용,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 및 연출용 시공부분, 공급안내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심의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이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월패드 등 모든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기계환기장치, 천정 환기구, 온도조절기 및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과 수량, 위치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 등기구 조도량 [lx]은 계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구현 된 것이며 본 공사 시 KS조도기준 동등 이상으로 적용 됩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품목, 별도계약품목 및 전시품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고 본 공사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될 예정인 바,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은 연출된 사항으로 실제로 시공 설치되지 않는 사항이며,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확인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연출용 제시부분의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건식벽체,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 부분의 디테일이 시공 상의 이유로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창호는 규격 및 사양(유리 및 틀),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접세대 및 동일세대 내부 각 부위별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발코니 벽체 일부 돌출 및 일부 실의 천정고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소방시설의 수량, 용량, 위치, 타입 등은 관련법령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의 주방TV 설치 방식은 연출용이며, 본 공사 시 전원, 통신 TV용 케이블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하향식 피난구, 완강기 등의 위치는 실 시공시 관련법에 맞추어 설치됩니다.

#### (단지)

- 당 아파트는 하나의 단지명으로 분양 및 홍보하지만 건축법상 1단지(연동 293-46번지)와 2단지(연동 292-53번지)로 분리된 개별 아파트 단지이므로 각 단지별 시설, 면적 등의 차이가 있으며, 관리규약 및 입주자 대표회의 등이 각각 구성됨을 수인·동의합니다.
- 단지 내부로 진입하는 보행자 동선이 남측에 인접한 8m도로(은남3길)에서 2개소, 북측에 인접한 10m도로(신대로14길)에서 2개소, 동측에 인접한 10m도로(은남길)에서 1개소 계획되어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단지 주출입구에 인접한 북측 10m도로(신대로14길)를 제외한 동측 10m도로(은남길), 서측 8m도로(연동13길), 남측 8m도로(은남3길)은 일방통행도로로 계획되어 있으니, 입주자는 계약 전 주변여건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단지(연동 293-46번지)와 2단지(연동 292-53번지) 사이에 위치한 10m도로(신대로14길)는 당 아파트 단지의 소유가 아님을 인지하여야 하며, 점유 및 변경 등의 어떠한 권리행사도 일체 할 수 없습니다.
- 단지경계부에는 훈스, 담장 등이 설치 되지않으며, 단지 서측 및 북측 도로에 접한 보도는 경관건축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개방된 보행공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 사업지 내 서측 1.5m보도(8m폭의 연동13길 도로변), 북측 1.5m보도(10m폭의 신대로14길 도로변)는 제주시 경관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통행가능한 공용 보도로 계획되어 있으나, 제공된 대지부분(보도에 매설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각종 관로 포함)에 대하여 소유권은 입주자에게 있으며, 입주자가 유지관리 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차량 주출입구는 북측, 부출입구는 남측에 설치되며, 부출입구에는 별도의 문주 등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의 폭은 7.1m, 부출입구의 폭은 6.7m지상주차장의 차로폭은 3.5~6.5m, 지하주차장의 차로폭은 6~6.5m로 구성되어 있고, 차로(출입구)의 높이는 2.3m로 계획되어있습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바랍니다.
- 단지 주변으로 2종일반주거지역이 위치함에 따라 일부 세대의 조망, 일조, 소음, 냄새, 사생활침해 등의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주변시설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의 주차는 지상 주차 44대 (근린생활시설 주차 2대 미포함), 지하1층 주차 89대로 총 133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은 단지 북동측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의 조망, 일조, 소음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며, 아파트 입주민과 근린생활시설 이용자간 동선의 혼재에 따른 피해가 있을 수 있음을 수인동의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단지 내 도로 북동측에 지상주차 2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사업승인도서 이외의 진입로 및 주차장 등 기타 부대시설의 추가 변경이나 확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입주민은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입점자, 근린생활시설 이용자, 쓰레기수거차량 등)과 지상 1층에 한하여 차량출입 차단기, 주부출입구 및 단지 내 지상1층 도로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공동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점유 등의 권리행사는 일체 할 수 없고 별도의 대지구획은 불가함을 수인동의 합니다.
- 아파트 입주민 및 근린생활시설 이용자는 각각의 주차구역만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필로티 구조 및 당초 공간계획에 따라 동별 필로티 하부 자전거보관소 수량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부지의 주부출입구로 진출입하는 차량의 헤드라이트에 의한 눈부심, 현위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수인동의 합니다.
- 대지와 도로사이의 고저차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지의 북측과, 남측 도로경계 인접부위에는 옹벽이 설치될 예정이니 자세한 내용은 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 시공시 일부 구간의 높이 및 형태, 재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지 동측과 북측의 폭 10m도로, 서측과 남측의 폭 8m 도로가 조성되어 있어 이로 인한 일부 소음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를 확인수인 합니다.
- 단지의 남동측 지하1층 선큰공간에는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스크린골프, 카페라운지, 옥외휴게공간, 벽천 등)이 설치되며, 주민공동시설에 의한 소음, 시각적 간섭 등에 의한 프라이버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지하 1층에 SUNKEN 공간으로 계획된 주민공동시설은 외부 지상1층에서의 출입이 불가하며, 주동 지하층을 통해서만 출입이 가능합니다.
- 각 동 공동부의 채광, 환기창호는 주거동의 조합 형태에 따라 각 동별로 위치, 크기 등이 다를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수인동의합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단지 내 지상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고,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 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101동과 102동 사이에 위치한 지상1층 8M도로 중앙에 구조기둥(101동 측벽)이 위치하며 이에 대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아파트(지하주차장 포함)의 구조(구조시스템 및 기초형식 등) 및 흙막이공법은 시공여건 또는 굴착 후 지반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단지 주부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문주, 근린생활시설, 조경 등 단지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위성안테나, 이동통신용 중계기 및 안테나(단지1층 포함), 피뢰침, 태양광설비,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 과정 및 실시공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천후면 외관, 측벽, 동출 입구,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마감재, 난간의 형태 및 높이,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 및 재료, 단지의 명칭, 동표시 등은 입주자의 동의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아파트 측벽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아파트 외부창호(발코니)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공장생산 자재(예: 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천연자재는 자재 특성상 일정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합니다.
- 아파트 외관 구성상 일부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본 아파트 단지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단지 내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입주자(입점자)와 일부 공동으로 사용할 예정임을 수인동의합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D/A 등)이 노출되어 있으며 소음과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훤룸의 환기용 D/A 및 제연嘿嘿의 급배기용 D/A는 본 시공시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주차장 환기용 그릴과 제연嘿嘿의 급배기용 그릴은 본 시공시 위치,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주차장, 외부휴게공간, 주민운동시설 설치로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차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및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1~2개층의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동의 필로티 옆, 상부 세대는 외부 통행, 외부 휴게공간에 의한 소음 발생 등,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필로티 상부층 세대는 바닥 난방효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주동 저층부는 석재, 테라코타 등의 외부마감재 및 물당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각종 심의 및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여건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각 주동의 11층과 12층 사이에 돌출되어 설치되는 구조물 하부에 위치한 84C 타입 일부 세대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등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문주 포함)의 차별화 디자인(조명계획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지상 1층 102동 하부필로티 내 부대복리시설용 실외기와 각종 설비휀 설치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환경권 · 소음피해 ·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균린생활시설 화장실, 실외기 등은 상가후면에 설치됨에 따라 인접한 일부 세대의 환경권 · 소음피해 ·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균린생활시설 출입문은 인접한 도로레벨에 따라 일부 단차에 의한 계단이 설치될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균린생활시설 옥상 관리를 위한 별도의 동선은 계획되어 있지않습니다. 추후 사다리 등을 통해 진입하여 관리하여야하며 이에 따른 저층세대의 사생활침해, 소음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수인동의합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은 제주특별자치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성기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으며, 미술장식품 설치가 되지 않고 기금출연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상, 하, 오수, 도시가스, 한전 등)계획은 인허가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수인 합니다.
-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주차장 출입구는 준공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고, 점용료의 납부는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의 구조물 외관에 브랜드용 광고 및 조명이 설치될 수 있음을 확인수인 합니다.
- 로비, ELEV-HALL, 복도 등 공용공간은 추후 설계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수인 합니다.
- 각 동별 저층 및 최상층 세대는 단위세대 방범을 위하여 세대 내 방범감지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를 확인수인 합니다.
- 이삿짐은 단지의 특성상 지상 1층을 통해 각동 승강기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차량으로 인한 주차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차량 동선, 무인택배함, 우편물수취함 등은 지상 1층에 계획되어있으며, 지하주차장은 대형차량의 통행이 불가힘을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수인동의합니다.
- 단지 조경(녹지, 조경시설, 옥상녹화, 옥상구조물, 자전거보관소 등)에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선형변경이나, 포장 및 조경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가 키탈로그 및 모형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수경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정기 점검, 수질검사, 소독, 안전관리요원 배치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부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놀이시설, 휴게시설, 수경시설, 운동시설, 포장시설, 수목관리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의 식재수종, 비상차량동선 및 산책로 선형, 식재수종, 주민운동시설 등의 위치 및 크기, 조경시설물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에 쓰레기 보관소(아파트, 균린생활시설)가 102동 3호라인 1층 필로티 하부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시각적 간섭,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외부운동시설(지상1층 101동 북측), 외부휴게공간(지상1층 101동 서측, 101동과 102동 필로티 하부), 균린생활시설(지상1층 102동 북동측), 선큰휴게공간 및 벽천(지하1층 102동 남동측) 등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각 구조 부재의 재료강도 부재크기 및 배근설계 등은 실시설계 시 증감 및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지정 및 기초형식은 실제 지반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말뚝 설계는 상세검토를 통해 증감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설흙막이는 상세검토와 현장상황 및 실제 지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현관에 스마트도어 카메라 설치로 동 출입구에 안내표지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은 대관 인허가 과정 또는 실시공시 사용자 동선/기능/디자인 개선 등의 사유로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하며, 제공 가구 및 마감재 등은 실시공시 자재수급 및 현장 여건으로 인해 동급 수준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집기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일부 세대는 외부 마감재 종류에 따라 타 세대들과 세대외부창호, 외관의 색상, 디자인이 다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중 일부 공간은 입주자정일 종료일로부터 3개월간 디엘이엔씨(주)에서 위탁운영됩니다.
- 본 단지는 150세대 미만 단지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주민공동시설)에 의거하여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작은도서관 등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가스정압기가 1단지(293-46번지) 지상1층 북서측(문주 좌측)에 설치되며 2단지(292-53번지)와 공동으로 사용됩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아파트 및 균린생활시설 전력공급을 위한 한전 인입장비 및 한전파드, 통신 인입맨홀, 통신주 등이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세대, 단지 내 보행로에서 보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및 1층에서 아파트로 출입하는 동별 출입문 및 공용홀은 동별로 구조적 조건이 상이하여 출입문이나 홀의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공용조명, 단지홍보사인물 포함)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 등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야간에 각 동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문주조명 및 경관조명에 의한 빛 공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부미감재료는 하자 및 보수용이성을 위해 행정기관의 경관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른 마감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상주차장의 주차면은 잔디블럭 설치로 빨 빠짐등이 발생할 수 있고, 잔디 블럭의 식종은 변경 될 수 있으며 관리는 입주민이 부담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세대 옥외공간은 건축법상 공용공간입니다.
- 일부 지붕(테라스) 및 외부공간은 세대 전용으로 사용 불가하며, 입주자 전용으로 테라스 사용 시 입주자의 과실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입주자의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공용부에서 접근이 곤란한 지붕(테라스) 및 외부공간 등은 진입이 가능한 세대에서 유지, 관리해야하며, 공간의 점검 필요 시 해당 입주자의 전용공간을 통해서 유지 보수를 해야하므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지붕 및 테라스 등 옥외 난간은 건축법 등 높이기준에 따라 투시형 철재 난간과 유리난간으로 설치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동 입면에는 외부 테라스 및 돌출 구조물로 인한 선흡통이 노출 될 수 있으며, 세대 내부로 우수배관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 101동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는 유효 높이가 낮은 공간으로 입주민 등이 이용 할 수 없는 공간이며, 천정에는 마감재가 설치 되지 않아 배관 등이 노출됩니다.
- 지상1층은 주변과의 레벨차이로 출입 등을 고려하여 일부구간 경사로 및 계단이 설치 됩니다.
- 단지 내 지상1층에 근린생활시설용 주차구역이 있으며, 해당 주차구역 내 입주민은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 지하1층에 설치된 유량 조정조는 단지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제주공공하수처리장까지 연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 허가조건에 따라 지차체와 협의 및 계획한 사항으로 입주자가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단지(293-46번지), 2단지(292-53번지)는 개별 사업승인을 득한 개별단지로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규칙[개정2017.10.28]에 따라 입주 후 2개단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1,2단지를 공동관리 할 수 있으나, 이는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한 부대복리시설의 공동사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공동관리 외에 시설의 공동 사용은 2개단지 각 입주자대표회의 상호간 협의해야할 별도 사항임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동통신설비/중계장치 설치 예정 위치 : 102동 옥상층에 옥외안테나 및 중계장치 설치, 지하주차장 101동 전기실에 중계장치 설치 예정 등)

#### (단위세대)

- 101동 지상2층(1호, 2호라인), 101동 지상3층(4호, 5호라인), 101동 지상12층, 15층(2호라인), 102동 지상12층, 15층(2호라인)에 위치한 일부세대는 외부 테라스가 설치됨을 청약 및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1동 지상2층(1호, 2호라인), 101동 지상3층(4호, 5호라인), 101동 지상12층, 15층(2호라인), 102동 지상12층, 15층(2호라인)에 위치한 외부 테라스는 공용공간으로 전용화 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각 동의 15층 세대의 천장고는 기준층 대비 50mm 높게 시공될 예정입니다.
- 84B타입의 다용도실과 145, 154타입의 팬트리(창고)의 도어는 가구도어로 계획되어 있고, 이는 다른 동일평형 타입의 터닝도어와 다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및 모형,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등에 따른 다양한 두께로 인해 안목치수가 도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그릴 창은 외관 디자인 통일을 위해 색상 및 사이즈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수인동의합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입주자의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돋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 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설치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확인, 수인 합니다.(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신발 걸림과 무관합니다.
- 인허가 과정 및 본 공사 과정 중 사용성 개선을 위해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수인동의합니다.
- 기준층 세대내 실외기 설치공간에는 하향식피난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상하부 세대간의 소음 및 사생할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수인동의합니다.
- 발코니에 설치된 하향식 피난구에는 어떠한 물품도 적재 및 보관할 수 없고, 비상 시 아래층 전유공간 이용 및 소방방에 따라 문 등에 잠금장치 설치로 인해 발생되는 법적 물질적 금전적인 책임 등을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으며, 이를 수인동의합니다.
- 욕실 및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수전 배수구, 배기구, 가스배관, 점검구 등의 마감, 위치 및 개소는 사용성, 효율을 고려한 설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내부 벽체는 일부 경량벽체로 사공되어지며, 부착물 설치시 경량벽체용 전용 철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 타일 및 석재, 바닥재 등 자재의 특성상 균등한 색상 및 무늬가 다를 수 있으며 이는 하자사항이 아님을 유념하시고,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합니다.
- 외부창호, 난간, 프레임 사이즈 및 색상, 유리색상, 두께 및 제품사양은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형별, 층별, 위치별로 각종 사양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층부 석재마감구간 창호크기는 일부 축소될 수 있습니다.
- 외관과 관련하여 외부 벽체가 내부에서의 시야를 일부 가릴 수 있음을 인지하고 수인동의합니다.
- 단위세대의 미서기창에는 일체형 유리난간이 설치되어 환기량이 일반적인 창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2층에는 하향식피난구(상부에서 내려오는 피난구 제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정내부의 설비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우수 선호통이 설치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배수구가 설치되는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 외기와 실내 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사용, 장시간 음식물조리, 실내빨래 건조대사용 등으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전기, 설비공사상 일부 노출배관의 시공이 불가피할 경우 실사용 면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는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 있는 배관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 하향식 피난구 설치되며 에어컨 실외기 설치 시 실외기실 출입문과 하향식 피난구를 사전에 피악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시 실외기 그릴의 손잡이 모양 및 개폐작동 방식, 환기구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천장 부위에 추가 단열공사로 인해 우물천장 깊이, 등 박스의 크기, 시스템에어컨, 스프링클러 헤드, 원형 디퓨저 등 천장부분이 변경(위치 및 깊이 등)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 환기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배관 등이 일부 노출될 수 있으며, 건축입면 및 내부 마감, 실 천정고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01동 및 102동의 12층 154타입은 11층 84C, 84B타입과 평면구성이 상이함에 따라 회장실 등의 설비공간의 위치가 수직으로 일치하지 않아 층상배관 설비를 계획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11층 84C, 84B타입의 거실 및 침실 상부에서 소음 및 진동 등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4C타입 11층 이하 세대는 12층의 돌출 슬래브로 인해 채광, 조망 등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4B타입의 중 101동 2호라인, 102동 2호라인의 드레스룸-1 창호 높이는 건축법 61조에 따라 7층 이하와 8층 이상으로 구분되어 창문의 크기가 다르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3~10층 완강기 교차 설치로 침실1 발코니 외부 창문의 개폐 방향이 상하부층과 다릅니다.
- 본 공사시 침실 도어에는 손끼임방지재가 설치됩니다.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 실외기실은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84B, 84C, 145, 154타입의 보일러실 및 세탁기 설치공간에는 환기창이 설치되지 않아 냄새, 소음, 결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4B타입 드레스룸-1의 0.8m×0.6m(0.5제곱미터이하)의 창문은 건축법 61조 2항에 적용되지 않는 채광창으로 최소한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하여 설치한 창문으로 인접한 세대와 시선 소음등 생활에 간섭이 생길 수 있으며, 유리에 시선 차폐용 필름 또는 불투명 유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외부 테라스가 설치되는 부분은 관리 및 유지 보수를 위하여 진입 되는 구간(세대거실 또는발코니등)은 난간 또는 난간턱이 설치 되지 않습니다.
- 일부 세대에 설치되는 옥외 테라스의 바닥 마감은 CG 및 모형에는 목재데크로 되어 있으나 이는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유지관리 및 하자방지를 위해 본시공시 타일로 변경될 수 있음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사공시 일부 세대에 설치되는 옥외 테라스의 우수 처리를 위해 상부세대의 우수관이 해당 세대의 옥외 벽면을 지나감을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계전기설비)

- 아파트 난방은 세대내 개별보일러를 이용한 바닥난방 방식입니다.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의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관계 법령에 의거 실내천정 내에 기계식 환기 장치가 설치되며, 이를 위한 환기구가 설치되며 기계식 환기 장치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복도 및 전용면적 천정 내부가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가스배관 등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전기, 통신, 맨홀 등의 인입위치 및 우오수 배관의 위치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천정내부에 상부세대 배관이 설치되어 배관소음 발생 및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수인동의합니다.
- 세대온수분배기, 급수급탕분배기, 통신함, 분전함은 세대 내 씽크장 하부, 신발장 침실 등에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는 시공시 여건에 따라 변동됩니다.
- 단위세대 천정내부에 유지보수를 위한 상부세대용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수인동의합니다.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되며, 입주 후 이에 따른 입주자 부담의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에는 세대환기를 위한 장비 및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본 시공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부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천정고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탑층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며 태양광에 의한 눈부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태양광으로 발전되는 전기는 공동부 전기로 사용되며, 태양광발전설비의 위치, 각도, 방향, 수량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각종 분양자료와 다르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측면 낙뢰를 방지하기위해 각 동에 피뢰 설비용 수뢰부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에서 수뢰부가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내 통신단자함, 세대분전반 설치 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아파트 단위세대 내 가스배관은 인입되어 있으나, 가스레인지 관련 설비가 설치되지 않을 것을 인지하시고, 추후 관련 설비사용은 관련공사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 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 및 피트층을 공동 사용하며 각종배선, 배관이 노출됩니다.
- 기계/전기실 등은 실 시공시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인허가 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이동형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콘센트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시 설치 수량과 위치변경에 따른 민원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 주방에 설치된 아일랜드 장은 위치를 옮길 경우 전기 배관 및 전선이 바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평면 옵션 선택에 따라 콘센트, 스위치, 조명의 수량, 월패드 등의 설치위치 및 규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현관 팬트리 및 주방발코니는 비난방구간이며 1층 주동출입구에는 에어커튼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1,2층(피로티 포함) 및 최상층 세대에는 세대 내 방범감지기가 설치됩니다.

#### (발코니확장)

- 아파트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절하게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파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행정관청에 신고 및 관리주체에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형을 고려한 설계로 비확장 선택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확장 선택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단,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 계약 불가함)
- 발코니에 설치되는 선품 및 드레인의 위치 및 개수는 건본주택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고, 인접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확장비용은 분양가 포함) 시공사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확장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사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사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샤시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시 동등 품질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VIII 기타 계약자 안내

###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평가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3항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구분	적용여부	구분	적용여부
고기밀 창호	적용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고효율기자재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대기전력 차단장치	적용	절수 설비	적용
일괄소등 스위치	적용	-	-

### ■ 감리자 및 감리금액 (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별도 )

구분	건축감리	전기 감리	통신/소방 감리
회사명	(주) 예인종합건축사사무소	(주) 대경엔지니어링	(주) 대경엔지니어링
감리금액	₩618,096,000	₩52,900,000	₩34,500,000

###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주)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01282021-101-0003200	₩ 68,411,000,000	입주자 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까지

###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 보증 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 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돋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자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흄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기타

- ※ 당사가 본 아파트 "대상사업"의 시행권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도 시행자 및 분양자(또는 임대인)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한다.
- ※ 분양자(매도인 또는 임대인)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 또는 임차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 또는 임대수입금(임대보증금, 월임대료, 분양전환금 등)을 임차인에게 지급할 일체의 금원을 포함한다)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의없이 승낙하기로 한다.

-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체결과 동시에 분양계약자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분양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함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음
-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 차입형 토지신탁

- 본 사업은 시행자인 (주)엠디엠플러스가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주)에 시행을 위탁해 진행하는 차입형 토지신탁사업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위탁자인 (주)엠디엠플러스이고, 한국자산신탁(주)는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신탁재산 중 현금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본 사업은 위탁자인 (주)엠디엠플러스,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주) 그리고 시공사인 디엘이앤씨(주) 간에 체결한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근거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 공급대금(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납부는 한국자산신탁(주) 명의로 개설된 분양수입금 관리계좌로만 입금가능하며, 동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하는 경우(지정계좌 이외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위탁자, 시공사 및 제3자에게 직접 또는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급대금을 납부)에는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분양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 공급계약은 신탁법에 의거 위탁자 (주)엠디엠플러스 및 수탁자 한국자산신탁(주)가 체결한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공급계약입니다. 본 공급 계약 대상재산에 대한 시공상의 모든 하자보수책임(사용승인 전, 후 하자를 불문하고, 오시공, 미시공 등을 포함한 일체의 하자담보책임 및 그에 같음 하는 손해배상의무)은 시공사인 디엘이앤씨(주)에서 부담하고 한국자산신탁(주)에 대하여는 하자보수 등과 관련하여 일체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매수인은 대상 부동산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 명의로 이전된 시점 또는 신탁기간 만료,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시점 중에서 빠른 시점에, 한국 자산신탁(주)가 매도인의 지위 및 수탁자의 지위에서 부담하는 모든 권리·의무(매수인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손해배상의무 등 포함)는 계약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엠디엠플러스에게 면책적으로 포괄승계되고, 공급 계약상의 매수인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위탁자 겸 수익자 (주)엠디엠플러스에게 면책적·포괄적으로 승계되며, 매수인은 이에 동의하고 수탁자인 한국자산신탁(주)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한국자산신탁(주)는 중도금 대출금 알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며, 매수인은 중도금대출기관 미지정 등으로 인한 분양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사업의 안정적 진행을 위하여 분양대금이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등의 상환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의 분양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한국자산신탁(주)에게는 발행 의무가 있으며, 발행은 (주)엠디엠플러스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발행하기로 합니다.
- 시공사 디엘이앤씨(주)는 분양 목적물의 분양 개시일부터 준공 시까지 매월 공사 진척 사항을 (주)엠디엠플러스에게 통지하고, 피분양자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공사 진척 사항을 디엘이앤씨(주) 홈페이지에 게시 및 공고하기로 합니다.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 · 표시사항

- 등록업자 : 한국자산신탁(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카йт타워
- 부동산 개발업 등록번호 : 서울070012
- 사업방식 : 차입형 토지신탁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소유권 100% 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 완납시 개별등기

####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회사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주체(시행사)	한국자산신탁(주)	110111-2196304
시행위탁사	(주)엠디엠플러스	110111-2638752
시공사	디엘이앤씨(주)	110111-7736808

#### ■ 견본주택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일동 6035-2

■ 홈페이지 : <https://www.elife.co.kr>

■ 분양문의 : 064-755-8300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경우 관계법령이 우선함)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